

2003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176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1. 28.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- 고성군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점검과 정비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예방위주의 방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함
- 2003년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하천정비사업비 36,000천원으로 재해위험 또는 긴급 재해시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코져 함.

2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
 - '97 ~ 2002 총 기금조성액 : 181,293,115원
 - '97 ~ 2002 법정기금조성액 : 537,907,000원
 - '97 ~ 2002 기금 이자수입 : 53,376,805원
 - 2002까지 기금사용액 : 409,990,690원
 - 2003년 법정기금 예산액 : 72,896,000원
- 2003기금사용계획 : 재해사전대비 하천정비 : 36,000,000원

3. 의결요청(안) : 덧붙임

2003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

2003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

1. 기금의 조성 현황

(단위 : 원)

구 분	조성액			지출액	잔액	지출내역	비고
	계	원금	이자				
합 계	591,283,805	537,907,000	53,376,805	409,990,690	181,293,115		
'97-'01	소 계	437,003,580	393,173,000	43,830,580	299,990,690	137,012,890	
	군 예산	347,003,580	303,173,000	43,830,580	209,990,690	137,012,890	'여소하천용역및
	도비지원	90,000,000	90,000,000		90,000,000		암전천 고성천 정비공사
2002	소 계	154,280,225	144,734,000	9,546,225	110,000,000	44,280,225	
	군 예산	79,280,225	69,734,000	9,546,225	35,000,000	44,280,225	녹명소하천정비공 사 및 영오천
	도비지원	75,000,000	75,000,000		75,000,000	-	하상정비

2. 기금의 조성 계획

(단위 : 원)

구 분	조성액	관 리 계 획
계	260,289,115	
기 조성 (기금원금)	181,293,115	○ 증식기금으로 정기에탁
2003당초예산	72,896,000	○ 2003년중 정기에탁기간이 만료되는 『증식용기금』 과 통합하여 50%이상은 신규로 정기 예탁하고 잔여분은 일시에탁
기금운용수입 (예 상)	6,100,000	○ 기금 이자 수입으로서 사업비 충당을 위해 일시 예 탁관리

3. 기금의 사용 계획

기금 조성액			사용계획		비 고 (잔액)
계	기조성	2003년분	사용액	용 도	
254,189,115	181,293,115	72,896,000	36,000,000	°도재해대책기금보조 사업에 따른군비부담분 사용계획 (영천강,영오천하상정비) 총 118,000,000 -도비지원 82,000,000원	218,189,115

※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상 사용기준

-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은 가급적 『사업비 총당금』으로 활용하고 불요 불급한 지출은 줄인다.(조례 제3조 제②항)
-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.(조례 제4조)
 - 1)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, 정비를 요하는 사업
 - 2)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
 - 3)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
 - 4)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, 수문, 배관, 우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
 - 5) 하수도시설(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)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
 - 6) 수리시설중 배수장, 방조제, 용수로,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
 - 7)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

4. 기금의 운용 방법

- ①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
- ② 조성된 기금은 기금 총액의 50/10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총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수 있도록 예탁관리
- ③ 기금의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로서 지출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